

# 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99-1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'99. 5. 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## 1. 폐지이유

- 농지의 개량·개발·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키고자 한 농촌근대화촉진법은
-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법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를 둔 김제시소규모 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에 관한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를 둔 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('95. 2.14, 제68호)는 농어촌정비법 제정으로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- 농어촌정비법 제정('94.12.12)으로 기존의 농촌근대화촉진법 폐지
- '99. 3. 9 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심의 의결

## 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

김제시소규모농지개량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('95. 2.14, 제68호)는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